

박정희새마을연구원 학술지 발행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부설 박정희새마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·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정의)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“새마을학연구(Journal of Saemaulygy)”라 칭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.

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

제4조(편집위원회) 학술지 발행의 기획, 논문 투고,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연구원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과 2인 이내의 간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구성은 특정의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

있다.

제6조(편집위원장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
2. 편집위원회 소집
3.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

제7조(편집위원회의 역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술지 발행의 기획, 논문 투고,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
 2.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
 3.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
 4.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.

제 3 장 학술지 발간

제8조(논문 공모)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지원비 지급)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연구지원비는 논문이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,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발행횟수 및 시기) ①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

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학술지 발행일은 매년도 6월 30일, 12월 30일로 하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. 다만, 발행 횟수를 조정할 경우,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1조(학술지 전자간행) 학술지는 일정기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 4 장 논문의 심사

제12조(심사위원의 선정)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. 단,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, 당해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- ②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

- ③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심사의 절차와 방법)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, 수정후 게재, 수정후 재심사,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수정후 게재 및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수정·보완 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-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‘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’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,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

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.

제14조(이의신청) ①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이의 내용을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

제15조(논문심사 기준)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연구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과 적합성
2.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일관성과 정합성
3.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
4. 학문적 기여도 및 정책 활용 가능성

제 5 장 보 칙

제16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(2014.11.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